

##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4. 9. 2.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06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4. 9. 2)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고 상 문

####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0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0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2조의2제3항)

0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4조의4제1항)

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참조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2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0 동 개정조례안은 2003.12.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과 2003.12.31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0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종의 세를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사실을 신고하고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안 제10조는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확인 확인 할 수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음.

0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2 제3항을 신설하였음.

0 안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의5제2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외부 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음.

#### <검토의견>

0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던 납세고지서를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우편으로도 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0 2004년도부터 과표산정방식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으로 변경된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우리 구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 평균 70.8%가 증가되어 서울시 평균 59%보다도 11.8%가 상회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내 일부 타 자치구에서는 재산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소급 적용키로 개정하는 추세에 있는 바, 우리 구도 2004년도 재산세 증가에 대한 해당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04. 8. 1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나.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2조의2제3항)
-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4조의4제1항)
- 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을 참조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2항)

### 3. 개정근거

- 가.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 제51조의2
- 나. 지방세법시행규칙(2003.12.31 행정자치부령 제213호) 제36조의3
- 다. 서울특별시세조례(2004.3.30. 제4182호) 제13조의2
- 라.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2004.5.31. 제3394호) 제135조

### 4. 조례(안) : 따로붙임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4.6.25~2004.7.1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2004. 8. 16.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의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1항중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 3명은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 기 준 문                                                                                                                                                                                    |
|-----------------------------------------------------------------------------------------------------------------------------------------------------------------------------------------------------|------------------------------------------------------------------------------------------------------------------------------------------------------------------------------------------|
| <p>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p>제12조의2(서류의 송달의 방법) ① ~ 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 <p>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구세 중 납부고지서 1매당 한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u></p>     |
| <p>제14조의4(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 3명은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p> <p>1. ~ 5. (생 략)</p> <p>② ~ ③ (생 략)</p> | <p>제14조의4(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 ———</p> <p><u>지명 또는 위촉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제14조의5(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p> <p>② <u>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 ⑧ (생 략)</p>                                                                         | <p>제14조의5(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